



피델리티 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시 종구 태평로 1 가 84 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4 층  
(우) 100-101

Telephone: 02 3783 0901  
Fax: 02 3783 0085

문서번호: FAMKL\_201001\_13  
날짜: 2010년 1월 25일  
발신: 피델리티 자산운용 주식회사  
수신: 판매사  
제목: 피델리티 코리아증권 자투자신탁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피델리티자산운용(주)에서는 귀사에서 판매중이신 피델리티 코리아증권 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 드립니다.

- 다 음 -

**변경사유:**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의 선취판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변경 및 과세관련 내용 중 일부 문구 삭제 등 기재사항 변경(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표 참조)

**주요변경내용:**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제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주석 추가]  주) 본 일괄신고서는 2009년 4월 16일자로 최초 제출된 본 펀드의 일괄신고서 내용 중 이후 정정신고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최초 제출된 일괄신고서의 다른 부분들은 원래 내용을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본문 전체를 상기 작성기준일자로 갱신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수수료]의 내용 중 <u>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u> 의 선취판매수수료	0.8~1.00%	<u>1.00% 이내</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선취판매수수료:	(가) 선취판매수수료: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당해 투자신탁, (가) 선취판매수수료</p>	<p>- 삼성증권 및 메리츠증권, 굿모닝신한증권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1%의 선취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수익증권 매입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선취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굿모닝신한증권의 경우 수익증권 매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선취수수료가 면제됩니다.</p> <p>- 신한은행, 한화증권 및 우리은행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증권 매입금액의 0.80%의 선취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신한은행은 수익증권 매입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선취수수료가 면제됩니다.</p> <p>- ING 생명, 하나대투증권, 외환은행, ING은행 서울지점,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IBK 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및 ING증권중개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증권 매입금액의 1.00%의 선취수수료를 부과합니다.</p>	<p><u>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1.0% 범위이내에서 납입금액에 따라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당해 투자신탁, (가) 선취판매수수료, [자투자신탁간 수수료의 차이 비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의 선취 판매수수료</p>	0.8~1.00%	<u>1.00% 이내</u>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투자신탁별 총보수·비용 비교] 표의 주석</p>	주 2)코리아증권 자 투자신탁 A (주식)은 선취수수료구간 0.8~1%이며, 상기 비용은 1%를 선취수수료로 가정하여 작성하였음.	주 2)코리아증권 자 투자신탁 A (주식)은 선취판매수수료를 1%이내로 부과하며, 상기 비용은 1%를 선취판매수수료로 가정하여 작성하였음.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에 관한 내용 중 일부 문구 삭제</p>	또한, 예를 들어, 수익자는 2009년 12월 31일 이후 한시적 비과세 혜택의 종료 시점 이후 외국상장주식	[삭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상승분은 수익자의 투자원금 대비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b>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p>3. 위탁판매계약서(부속서류 포함) 사본: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3. 위탁판매계약서(부속서류 포함) 사본: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관계법령에 따라 위탁판매계약이 증권신고서에 따른 첨부서류로 요구되지 않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는 추후 폐쇄될 수 있습니다.</u></p>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피델리티 코리아증권 자투자신탁 투자설명서 각 1부  
          (2) 피델리티 코리아증권 자투자신탁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  
          (3) 피델리티 코리아증권 자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1부. 끝.

피 델 리 티 자 산 운 용(주)

